

제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 
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0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#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10월 24일  
전문위원 권 오 숙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108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12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6일

## 2. 제안이유

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재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#### ○ 시설개요

시 설 명	소 재 지	시설규모	면적(m <sup>2</sup> )
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	강서로5길 50(곰달래문화센터)	지상 3층	800

※ 주요시설: 프로그램실, 정보화교육실, 경로식당, 바둑장기실, 사무실, 라운지

- 위탁사무 내용
  - 어르신복지센터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위탁기간: 5년(2024. 3. 1. ~ 2029. 2. 28.)
- 수탁자 선정방식: 재계약 민간위탁
- 소요예산: 총2,642,978천원  
(구비 2,542,978천원, 자부담 100,000천원)

#### 나. 추진일정

- 2023년 8월: 위탁운영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서 접수
- 2023년 9월: 재계약 심의계획 수립 및 재계약 수탁자 선정 심의
- 2023년 10월: 구의회 동의안 상정
- 2023년 12월: 협약 체결 및 공고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, 제3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7조, 제10조, 부칙 제3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
- 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 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,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,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
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
- 현재 우리 구 노인복지관은 시립 1개소[강서어르신종합복지관]와 구립 4개소[화곡, 연지, 봉제산, 곰달래 어르신복지센터]가 운영되고 있는데
-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는 2013년 3월 설립된 이래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에서 3차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, 2024년 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실시(2023. 9. 26.)하고 ‘적정’ 심의 완료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임

- 위탁 연혁 -

구 분		위탁기간	위탁법인	비고
1회	위탁 (공개)	2013.3.1.~2016.2.28.(3년)	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  법인대표: 정은주 시 설 장: 조중현	<b>법인 명칭변경</b> (2021. 8. 17.)  사회복지법인 헤미피아 →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
2회	재위탁 (공개)	2016.3.1.~2019.2.28.(3년)		
3회	재위탁 (공개)	2019.3.1.~2024.2.28.(5년)		

-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<sup>1)</sup>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생애에서 노년기의 삶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,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노인문화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 상황으로
-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, 변화에 대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
-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1) 통계청의 '2022 고령자 통계'에 따르면,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7.5%이며,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.6%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

**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**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**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**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**□ 「노인복지법」**

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노인의료복지시설
3. 노인여가복지시설
4.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노인보호전문기관
6.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
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**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**

제5조(시설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

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 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⑦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

## 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 2. 노인·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제15조(위탁계약의 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부칙 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